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서울)제이티친애저축은행

2. 조치요구일 : 2023. 10. 20.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연체채권 감축방안 마련 필요

최근 3년간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검사기준일 현재 업계평균 연체율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 연체율 추이 : [2021.12월말] 3.37%→[2022.12월말] 4.30%→[2023.3월말] 5.17%

연체여신 발생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연체여신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이미 보유 중인 연체여신에 대해서는 신속한 매각 및 상각을 추진하는 등 연체여신 감축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자기자본비율 관리방안 마련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검사기준일 현재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업계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향후 경기변동 등에 따른 대출채권 부실 증가시 대응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추이 : [2021.12월말] 11.50%→[2022.12월말] 11.26%→[2023.3월말] 11.05%

앞으로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기자본비율 관리방안을 구체화하고, 특정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대주주 등과의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내규 「이사회규정」에 따르면 유형·무형 자산의 취득, 채권 매입 등 금전을 동반하는 계약의 거래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에 보고·결의토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거래 및 무상거래의 경우 대주주 등과 저축은행 간 이해상충 소지가 있음에도 이사회의 심의·의결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주주 등과 저축은행 간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거래는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관련 내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대출수수료 수취업무 관리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차주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차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수수료를 징구하여야 함에도,

검사대상기간 중 PF대출을 취급하면서 수수료 수취 시 차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등 일부 미흡사항이 발견되었는 바,

앞으로 수수료 수취 관련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차주를 위해 제공한 서비스를 명확히 기재하는 등 수수료 수취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금융사고 예방업무 불철저

내규 「금융사고예방지침」 제22조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고 관련 중요 열쇠는 1인이 취급 및 관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규「금고 및 중요열쇠 관리지침」제10조에서는 관리책임자 1인이 중요 열쇠를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내규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검사대상기간 중 실제 영업점에서 지점장 1인이 중요열쇠를 모두 관리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금융사고 발생위험이 있으므로,

앞으로 금고, ATM기 등 관련 중요열쇠 및 출입권한을 1인이 취급 및 관리하지 않도록 내규를 개선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